

(第12回－文化教育第3次)

<p><b>봐서 하세요.</b></p> <p>○企劃管理室長 金鎮成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金委員님이 提案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그러면 서울特別市 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지금 金寅東委員께서 일 단 이 案은保留하자고 하는 案이 들어와 있습니다. 여러 委員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</p> <p>○朴善童委員 保留하는 것을 同意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그러면 金寅東委員께서 낸 이 改正條例案은保留하는 案이 들어왔습니 다. 그리고 再請이 들어와서 일단 이 案이 성립이 됐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이 案은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서울特別市 教育監이 提出한 서 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 에 대해서 우리 金寅東委員이 發議하신 대로 保留하자고 하는데 異議가 없으신 것으로 알 아서 이것을 保留하는 것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그려면 우선 충분히 이것을 다시 再檢討해 서 충분한 資料를 提出하면서 그 때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保留하겠습니다.</p> <hr/> <p>2.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 特別市教育監 提出)</p> <p>(10시 54분)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 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 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 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管理局長 柳根夏 教育廳 管理局長 柳根夏입 니다.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	<p>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, 서울특별시립으로 '95학년도 1학기중에 국민 학교 4개학교, 중학교 6개학교, 고등학교 1 개학교, 국민학교병설유치원 7개원을 신설, 개교 또는 개원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둘째, 주요골자로 먼저 국민학교는 4개 학 교로 남부교육청 관내 영등포구 대림동의 서 울신대림국민학교, 북부교육청 관내 노원구 월계동의 서울녹천국민학교, 강서교육청 관내 강서구 가양동의 서울등명국민학교와 강서구 등촌동의 서울등현국민학교입니다.</p> <p>중학교는 6개 학교로 북부교육청 관내 노 원구 월계동의 녹천중학교와 노원구 상계동의 노일중학교, 강서교육청 관내 강서구 화곡동 의 화원중학교와 강서구 등촌동의 등원중학 교, 강서구 가양동의 등명중학교와 성재중학 교입니다.</p> <p>고등학교는 영등포구의 양평동의 한강전자공 예고등학교 1개 학교인데, '94.2월말 폐지된 한강여자중학교 위치에 설립되는 것입니다.</p> <p>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7개원으로, 동부 교육청 관내 서울동원국민학교병설유치원, 서 부교육청 관내 서울창천국민학교병설유치원, 남부교육청 관내 서울두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, 중부교육청 관내 서울충무국민학교병설유치원, 강동교육청 관내 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, 강서교육청 관내 서울내발산국민학교병설유치 원, 동작교육청 관내 서울신남성국민학교병설 유치원입니다.</p> <p>셋째로, 조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·운영한다”라 고 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2조입니다.</p> <p>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입니다.</p> <p>지금부터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 案의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
--	---